



감사원

주의요구(약식)

제 목 매출원가로 처리하여야 할 비용을 판매관리비로 처리

소 관 기 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조 치 기 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 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위 공사”라고 한다)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임대업 등 그 외 기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위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기준’(이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38.2에 따르면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지침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이 제공하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에 따르면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를 말하며, 판매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한 비용은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의 경우에는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는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서 본사 및 광고회관, 방송회관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 178억여 원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위 임대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비용인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등 102억 원에 대해서는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관리비에 계상하였다.

그 결과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매출원가 102억 원이 과소계상되고, 판매관리비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계상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앞으로 임대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한 비용을 판매관리비에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결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